

## 「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5년 11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,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I. 제안이유

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# II. 주요내용

#### 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

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기금 적립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#### 나.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[단위:천원]

기 금 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
합 계(8건)	39,770,727	29,769,324	10,001,403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81,331	81,331	0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21,876,111	11,874,708	10,001,403
평 창 군 자 활 기 금	530,813	530,813	0
평 창 군 고 향 사 랑 기 금	1,191,654	1,191,654	0
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	2,785,943	2,785,943	0
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	248,244	248,244	0
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	1,714,283	1,714,283	0
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	147,507	147,507	0
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1,194,841	11,194,841	0

### Ⅲ. 기금변경 개요

#### □ 변경기금 조성규모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과 개별법에 따라  
설치 및 관리·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기금으로  
2025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기정대비 2,409백만원이 증가한 26,702백만원임.

[단위:천원]

기 금 명	2024년도말 조성액①	2025년 운용계획		2025년도말 조성액 ④=①+②-③	당초대비 증 감
		수입 ②	지출 ③		
합 계(8건)	24,292,939	13,763,505	11,354,264	26,702,180	2,409,241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1,609,877	10,347,565	8,000,000	13,957,442	2,347,565
통 합 계 정	78,829	2,502	0	81,331	2,502
재 정 안 정 화 계 정	11,531,048	10,345,063	8,000,000	13,876,111	2,345,063
평 창 군 자 활 기 금	515,008	15,805	28,000	502,813	△12,195
평 창 군 고 향 사 랑 기 금	889,654	302,000	55,000	1,136,654	247,000
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	2,233,943	552,000	999,000	1,786,943	△447,000
평 창 군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	218,824	29,420	0	248,244	29,420
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	1,182,228	532,055	650,000	1,064,283	△117,945
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	113,899	33,608	33,296	114,211	312
평 창 군 농 축 산 물 가 격 안 장 기 금	8,711,734	2,483,107	2,238,968	8,955,873	244,139

### Ⅳ. 검토결과

#### 가. 기금운용 변경계획(총괄)

- 수입·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0,001백만원 증액된 총 21,876백만원이며
  -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,000백만원,  
이자수입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,
  -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서 예치금 10,001백만원을 편성하였음.

<기금운용 변경내역>

[단위:천원]

구 분	계획액		기 정 계획액		증감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총 계	39,770,727	100.00%	29,769,324	100.00%	10,001,403	33.60%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81,331	0.20%	81,331	0.27%	0	0.00%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21,876,111	55.01%	11,874,708	39.89%	10,001,403	84.22%
평 창 군 자 활 기 금	530,813	1.33%	530,813	1.78%	0	0.00%
평 창 군 고 향 사 랑 기 금	1,191,654	3.00%	1,191,654	4.00%	0	0.00%
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	2,785,943	7.01%	2,785,943	9.36%	0	0.00%
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	248,244	0.62%	248,244	0.83%	0	0.00%
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	1,714,283	4.31%	1,714,283	5.76%	0	0.00%
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	147,507	0.37%	147,507	0.50%	0	0.00%
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1,194,841	28.15%	11,194,841	37.61%	0	0.00%

나. 기금별 변경내역

□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(기획예산과)

- 수입·지출계획은 21,87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,001백만원 증가.
  - ▶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,000백만원, 이자수입 1백만원 증가
  - ▶ 지출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예치금에 10,001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.

### <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>

[단위:천원]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21,876,111	11,874,708	10,001,403	합 계	21,876,111	11,874,708	10,001,403
전 입 금	10,000,000	0	10,000,000	예 치 금	13,876,111	3,874,708	10,001,403
예 치 금 수 회	11,531,048	11,531,048	0	기타지출	8,000,000	8,000,000	
이자수입	345,063	343,660	1,403				

#### 다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. 금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 계정)의 예치금이 기정계획 대비 10,001백만원 258.1% 증액 변경되었습니다.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. 2025년도에 발생한 보통교부세, 세외수입 등의 잉여금을 향후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100억원과 이자수입 등 총 10,001,403원을 예치금에 지출하는 계획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59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 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